

## 계약특수조건

1.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역 수행자가 용역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 공고 상 내용과 같은, ▲시·도회별 별도 계약 ▲계약가 변동없는 CI동판 제작 및 내지쪽수 증감 ▲납기 엄수 ▲낮은 제품질 혹은 불량에 따른 재제작 ▲내지 중 “건설업 관계업무 요약” 부분 수정 요청 등
  - 제작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현저히 공정이 미달될 때
  - 제작진행 중 용역내용 오류사항에 대한 변경 및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때
2. 제안 및 계약과 관련한 일체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준비하는 제안 및 제반서류에 따른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3.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사용권이 주어진다.
4.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5.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제작물을 시중에 유통시킬 경우 제작업체는 총계약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배상한다.
6. 계약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주요정책사항이나 업무상 기밀 등의 보안유지 의무를 지닌다.